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심기보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청북도 공인조례의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21일 개정을 통하여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동규정 제41조가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직제변경에 맞게 문서과를 총무과로,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사무관리규정 제41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직제변경에 맞게 명칭 변경(안 제4조 및 제12조)

- 문서과 → 총무과
- 정보통신과장 → 정보화담당관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변경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띄어쓰기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조문 변경에 따라 제41조를 제40조로 변경하며, 직제변경에 따라 문서과를 총무과로,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